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검 토 보 고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실행 및 금전적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 등이 긴급하게 실시할 수 있는 조치 등의 근거 마련〉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제정안의 배경	3
나. 제정안의 구성·주요내용	6
다. 관련 법률과의 비교	8
라. 제정안에 대한 검토	15
마. 해외 입법례	17
바. 관계기관 의견	21
2. 조문별 검토	23
가. 목적(안 제1조)	23
나. 정의(안 제2조)	24
다.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31
라.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안 제4조)	32
마.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등(안 제5조)	34

바. 정보통신망 방지조치 등(안 제6조)	38
사.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안 제7조)	42
아.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안 제8조)	44
자. 다중피해사기 이용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안 제9조) ...	47
차. 벌칙(안 제10조)	50

I.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7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9.
3. 회부연월일 : 2025. 12.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변종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전화 외에도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함)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2)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
- 3)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다중피해사기 방지,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일시정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4)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II.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배경 : 다중피해사기 행위 방지 및 피해 예방 필요성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빠르게 발전했고, 은행의 예금 금리 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변화된 경제 및 기술 환경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유사수신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죄는 불특정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 같은 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¹⁾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 현상은 현행 형법의 사기범죄가 상정²⁾했을 법한 현상인 가해자 1인이 피해자 1인에 대해 범한 사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다중사기범죄라는 별도의 개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³⁾

1) 2025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위치한 범죄단지의 모습, 온라인 거짓 채용 공고 이후 고문, 협박 등을 통해 범행에 동참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 등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2) 전통적인 사기범죄는 개인적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통상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임. 「형법」 총칙에 공범(법 제30조~제34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적인 피해를 경합범(법 제37조~제40조)으로 규정함.

3) 김대근,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130면·131면, 2018
이 논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기존의 규범체계에서 포섭하는 경우 가벌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고, 범죄로 인한 이익과 피해를 한참 밑도는 처벌 수준에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유형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이 있음. 대표적인 다중피해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2025년 23,360건이 발생하여 1조 2,57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주요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범죄 현황

(단위: 건, 명, 억 원)

구 분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노쇼사기
발생건수	23,360	5,049	2,685	6,853	2,192	6,515
검거인원	32,370	1,678	505	4,012	522	561
피해액	12,578	250	328	6,581	1,360	1,256

자료: 경찰청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의 환급 비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언론에 보도된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현황에 따르면 특정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1만 5,437건, 2,278억 1,200만원에 달하지만 피해자의 범죄 피해 환급액은 3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피해금이 인출된 후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환급되어 피해구제 신청액 보다 낮기 때문임.⁴⁾

의해 형벌의 목적인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규제 도구(처벌의 근거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가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과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4) 매경ECONOMY 2023. 10. 24. 기사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2278억...환급액은 고작 이것뿐? [국회 방청석]”

2018년~2023년 8월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피해 발생시기	피해구제 신청(피해발생)		환급(피해 보전)	
	건수	피해자 신고액	건수	환급액
2018년	3,095	37,546	3,095	7,657
2019년	4,158	66,324	4,158	11,540
2020년	2,210	33,135	2,210	4,195
2021년	2,548	33,533	2,548	4,133
2022년	2,187	26,831	2,187	2,933
2023년 8월	1,239	30,443	1,239	1,742
합 계	15,437	227,812	15,437	32,200

※ 환급액은 피해금이 인출된 후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환급되어 피해구제 신청액보다 낮음

자료: 농협은행, 매경ECONOMY 2023. 10. 24. 기사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2278억...환급액은 고작 이것뿐? [국회 방청석]”에서 재인용

이를 고려하면, 국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중피해사기 범죄 집단에 대한 수사 및 검거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중피해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가 해당 전화 등을 받더라도 계좌이체를 하지 않도록 하며, 범인들이 범행 이용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더라도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범죄 발생 단계에서의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경찰청 등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실행(전화, 문자, 인터넷 등) 및 재산 피해(계좌 이체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칙 10개 조항,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제정안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와 ‘다중피해사기 위험 행위’ 등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안 제2조).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제정안은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실행을 막기 위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그리고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음으로, 제정안은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 계좌에 대한 이체, 계좌의 송금 또는 출금을 30일의 범위에서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또한,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총칙	· (목적)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1)
	· (정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등정의(§2)
	· 국가 등의 책무(§3)
경찰청 전담부서	· 경찰청장은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 설치·운영(§4)
다중피해 사기 방지	·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5①) 긴급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차단 요청(§5②)
	·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 확인 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제공(§6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조치 요청(§6①) · 예방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가능(§6②)
피해방지	· 경찰청장은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에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 요청(§7①)
	·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 확인 시 금융회사에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8①)
	·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가상자산 확인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입금 출금 차단 요청(안 제9조)
벌칙	·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제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관련 법률과의 비교

(1) 개괄

제정안의 전화번호 및 금융계좌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등이 관련되고, 제정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된 조항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있음.

제정안의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이 있음.

제정안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제정안 조항	내용	관련 법률 조항
제4조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
제5조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6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예방조치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조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8조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비교

제정안에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은 경찰청장이 긴급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직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안 제5조제2항)과 경찰청장이 금융기관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안 제7조제1항)임.⁵⁾

제정안의 내용 중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안 제5조제1항)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안 제8조제1항).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찰청에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는 금융회사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피해의 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비교

구 분	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⁶⁾
전화번호 이용중지긴 급차단요청	·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신 역무 제공 중지(이용중지) 요청(\$5 ①)	·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 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 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를 요청(\$13의3)
	·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이 명백한 전화번호에 대해 긴급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7일 이내 기간 동안 전화번호 긴급차단 요청(\$5②)	
계좌 임시조치	· 경찰청장은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 에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 하는 임시조치 요청(\$7①)	·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 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이체, 송금 및 출금을 지연시키 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함(\$2의5).
계좌 지급정지 요청	·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 용계좌 확인 시 금융회사에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8①)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4 ①2)
전담부서의 설치	·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 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다중 피해사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4)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 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 용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2의7)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로의 정보 전파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

(3) 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시조치의 발령은 권리가 침해된 자의 요청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경찰청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이 임시조치 발령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교

구 분	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⁷⁾
정보통신서비스 정보접근 제한		(수사기관 장의 요청에 따른 시정명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유통되는 범죄를 방조·교수하는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고,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함(§44의7③)
	·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 확인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 제공 (§6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조치 요청 (§6①) · 예방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중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6③)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등 권리가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 등 가능 (§44의2①·②·④)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44의3①)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⑥ (생략)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8. (생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생략)

라. 제정안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경찰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실행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전화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기범죄 이용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보이스피싱 등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금을 회복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에서는 다중피해사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피해사기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 체계가 명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현행 법률 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고, 정무위원회에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80)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체계상 제정안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법체계에 반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는 범행의 요건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형법」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과 차이가 있고, 이 경우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해외 입법례

(1) 싱가포르⁸⁾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경찰청 소속으로 반사기센터(Anti-Scam Centre)를 운영하고, 경찰과 은행이 공동으로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계좌를 동결함.

2025년 제정된 싱가포르의 「사기피해자보호법」(Protection from Scams Bills)에서 경찰이 사기 피해자 계좌의 출금·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한명령(Restriction Order)를 발부할 수 있음.

(2) 대만⁹⁾

대만은 2004년부터 경찰청 산하에 165 사기방지센터를 운영함. 경찰, 통신사, 금융기관이 실시간 협업하여, 의심전화 및 계좌를 일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함.

2024년 제정된 대만의 「사기 위해 방제 조례」에서는 금융 통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상거래의 탐지, 신원확인, 피해자 보호 등의 사기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사기 혐의 계좌의 동결 및 자금 이동을 제한함.

8) 출처: 경찰청

9) 출처: 경찰청

(3) 호주¹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 산하 국가사기방지센터(National Anti-Scam Centre)를 운영함.

2010년에 제정된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은 사기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함.

(4) 영국¹¹⁾

액션프로드(Action Fraud), 사기정보분석국(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등 사기 범죄 통합신고 및 정보분석체계를 운영함.

2023년 제정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자사기 광고 삭제, 사용자 보호 목적의 콘텐츠 필터링 의무를 부과함.

(4) 일본

일본은 사기 범죄 대응 법률에는 형법¹²⁾,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¹³⁾, 범죄 이용 예금 계좌 등에 관한 자금에 의한 피해 회복 분배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¹⁴⁾, 휴대음성통신사업

10) 출처: 경찰청

11) 출처: 경찰청

12) 일본어 제명 刑法

13) 일본어 제명 組織的な犯罪の處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14) 일본어 제명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拂等に関する法律

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¹⁵⁾이 있음.¹⁶⁾

사기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권한에는 예금계좌 등에 대한 동결조치¹⁷⁾, 웹사이트 차단, 전화번호 차단 등이 있음.¹⁸⁾

(5) 독일

독일의 사기 대응 법제에는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정보통신법(Telemediengesetz), 네트워크 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자금세탁방지법(Geldwäschegesetz), 은행법(Kreditwesengesetz) 및 유럽 연합의 사기 방지 지침(2017/1371), 유럽사기방지청(OLAF)의 조사에 관한 규정(No 883/2013)이 있음.¹⁹⁾

사기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권한으로 은행 계좌 동결, 웹사이트 차단, 전화번호 차단, 형사사건에서의 자산 압류 및 동결, 법원의 임시금지 명령, 국제 협력 및 국경간 조치가 있음.²⁰⁾

15) 일본어 제명 携帯音聲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聲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16)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120~123면, 2025

17)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범죄 이용 예금 계좌 등에 관한 자금에 의한 피해 회복 분배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第三條 金融機關は、当該金融機關の預金口座等について、捜査機關等から当該預金口座等の不正な利用に関する情報の提供があること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犯罪利用預金口座等である疑い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預金口座等に係る取引の停止等の措置を適切に講ずるものとする。

제3조①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예금계좌 등의 부정한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사실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이 라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예금계좌 등과 관련된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적절히 강구한다.

18)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129~130면, 2025

19)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102~106면, 2025

20)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110~112면, 2025

(6) 미국

미국의 사기 대응 법률에는 형법과 특별법이 있음. 특별법에는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1998년 신원사기·사칭방지법(Identity Theft and Assumption Deterrence Act of 1998), 소비자대여법(Truth in Lending Act), 전화 소비자 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2009년 사기단속 및 피해회복법(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 of 2009) 등이 있음.²¹⁾

미국의 사기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권한에는 금융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웹사이트 차단, 전화번호 차단 등이 있음.²²⁾

21)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88~91면, 2025

22)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국립군산대학교 최재훈 교수),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93~97면, 2025

마. 관계기관 의견

1) 경찰청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는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악용하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지능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방지 노력이 필요하므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법 제4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관련 조문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대통령령²³⁾(각 부처 직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직접 보조기관 설치를 규정함은 정부조직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직 관리의 통일성·일관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제정안의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의 다중피해사기 등의 신고·제보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기 수행 중이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다중피해사기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닌 현행과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정보 삭제 시정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임.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피해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 및 금융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는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5년에 캄보디아 납치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제화, 조직화, 기업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 범행이 조직화되고, 초국경 특성을 보이며 상위 조직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 범행이 지속되어 국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 예방 정책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한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란 다중피해사기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보전,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광고·유인하는 행위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이나 영업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광고·유인하는 행위
 - 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라.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타인 또는 허무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정보·상담 등을 제공할 것으로 가장하면서 인터넷주소 등으로 접속을 유인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 사기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
3. “다중피해사기 관계기관”이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 수사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다중피해사기피해자”란 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외국사기대응기구”란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제 정 안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기구를 말한다.

6.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란 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다중피해사기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다중피해사기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다중피해사기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7.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8.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9.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13.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말한다.

14.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 및 투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정안 제2조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다중피해사기 관계기관, 다중피해사기피해자,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 외국사기대응기구 등 제정안의 주요 개념을 정의함.

제정안 제2조제1호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를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개념에는 현행 「형법」상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요건에 포함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를 고려하면, 현행 「형법」상의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달리, 제정안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범죄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사기 범죄의 개념 비교

개념	근거 조항	내용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제정안 제2조제1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²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사기	「형법」 제347조 ²⁵⁾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25)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참고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80)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행위 등을 통해 다중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8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다중피해사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중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 나.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범한 행위
 -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범한 행위

경찰청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는 통신 또는 금융 관련 방지조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범죄 구성요건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범죄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임.²⁶⁾

학계에서는 사기죄 등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형법만의 독특한 규정 내용이고,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목적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점에서 범죄자의 이욕행위보다는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²⁷⁾

다만,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다중피해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예방, 수사, 재판 과정에서 동일한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26) 참고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4조제3항제1호나목은 제정안과 동일한 범죄를 다중피해사기범죄로 약칭하고 있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다중피해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사건에 이용된 인적·물적 범행 수단 관련 사건

2. ~ 6. (생략)

27) 임석순,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이득의 체계적 지위”, 「비교형사법연구」 2020 vol.21 no.4 296면

하여 「형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사기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2조제2호는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를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보전,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광고·유인하는 행위 등으로서 다중피해사기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제정안 제2조제2호는 실제 그간 접수된 신고·제보 내용을 토대로 다중피해사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유인행위를 유형화하여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로 규정한 것임.

제정안 제2조제2호는 사기 미수 또는 그 이전 단계인 예비, 음모에 해당하여 기존 형사법상 처벌 영역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우나 범죄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영역을 ‘위험행위’로 설정하고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각종 방지조치와 연계하여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위험행위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제정안 제2조제2호가목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제정안 제2조제2호바목은 사기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

정안과 같이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개념을 도입하기 보다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다중피해사기의 예비, 음모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최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및 위험행위를 정의하여 이에 대한 각종 예방조치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피해 방지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2025년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화되고 있으므로,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다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는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악용하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지능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라.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중피해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이하 “다중피해사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제보 접수 및 처리 2. 다중피해사기 발생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전화 번호 이용중지 등 이 법에 따른 방지조치에 필요한 정보제공 3. 다중피해사기 관계기관 및 외국 사기대응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그 밖에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대응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전담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조는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경찰청은 2025년 9월 29일부터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

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확대 개편하여 통신·금융·수사 기능을 실시간 연계하는 범정부 통합기구로 재편함.²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135명으로 구성되며, 2025년 9월 17일부터 24시간 운영하며, 2025년 10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 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실시하고, 대국민 예·경보를 발송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라 경찰청의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근거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각종 통신·금융수단을 악용하여 초국경·지능화되는 다중피해사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통신·수사 등을 통합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대응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 대만 등의 경우에도 경찰청 산하에 사기범죄 대응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8)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11명이 파견 근무중임.

마.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등(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이하 “이용중지”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특정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제보가 접수되거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통한 추가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다중피해사기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에게 긴급차단 요청 사실, 사유,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긴급차단은 최대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원발신번호·고유식별번호·가입일자·착신전환 전화번호·하위재판매사업자명 등의 자료(이하 “관련 자료”라 한다)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차단된 전화번호의 이용자는 경찰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번호는 범행 초기 단계에서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번호 이용중지는 범죄성립을 전제로 이용중지 대상을 규정,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 대응체제로 기능하기보다는 사후적 제재에 가까운 구조로 범죄자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이용중지 될 때까지 동일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제정안 제5조제1항은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와 다중피해사기 위협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 차단(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제정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중지는 번호 회선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최대 3년 동안 차단할 수 있고, 이용중지를 위해서는 1~3일이 소요됨.²⁹⁾ 제정안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차단은 수·발신 기능을 정지하여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최대 7일 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것임. 긴급차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임.

2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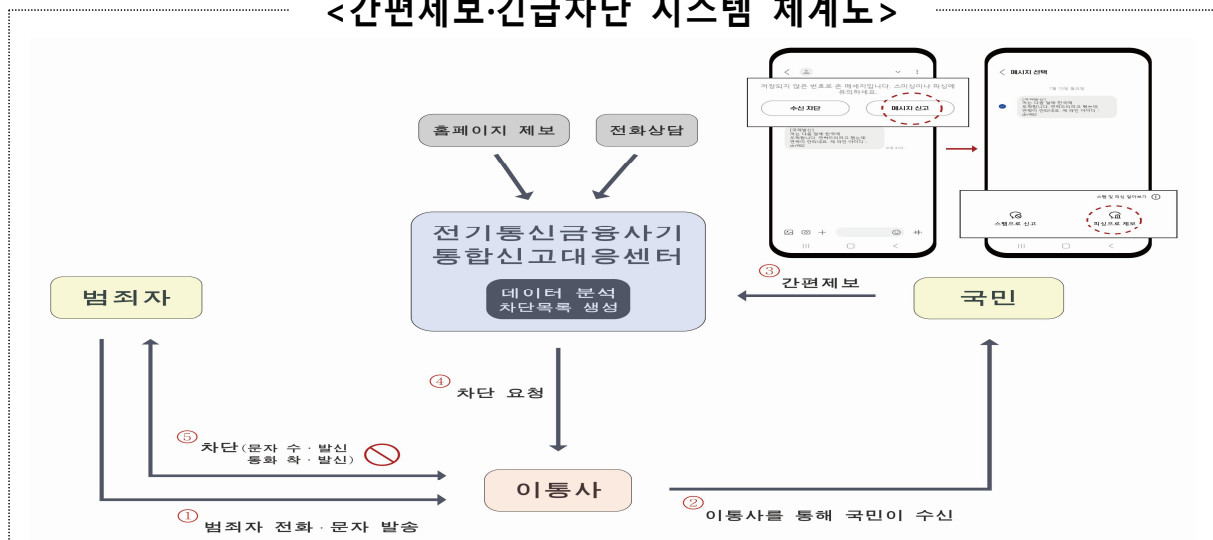
이용중지와 긴급차단의 비교

구분	차단 방식	대상	차단기간	차단 소요시간
이용중지	번호 회선 정지	가입 통신사	최대 3년	1~3일
긴급차단	수·발신기능정지	통신 3사	7일 이내	10분이내

자료: 경찰청

참고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실시하고 있음.

<간편제보·긴급차단 시스템 체계도>



자료: 경찰청

제정안 제5조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에게 긴급차단 요청 사실, 사유,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다중피해사기 범죄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정보를 포착하여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제정안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중피해사기 범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하게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는 각종 통신·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범행수단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임.

바. 정보통신망 방지조치 등(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정보통신망 방지조치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관련 신고·제보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확인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다중피해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중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차단조치 등을 받은 이용자는 경찰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1월 한달간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전체 피해신고서(6,400건)를 분석한 결과, 범죄이용 메신저정보가 입력된 피해신고서(4,260건)는 전체의 66%를 차지, 카카오톡(44%), 텔레그램(21%), 라인(14%) 등 다양한 유형이 활용되고 있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메신저 현황

구 분	범행에 이용된 메신저							합계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틱톡	기타	
이용건수	1,892	881	609	248	144	75	411	4,260
비중	44%	21%	14%	6%	3%	2%	10%	100%

자료: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계정정보’를 카카오에 제공, 카카오는 약관³⁰⁾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경찰청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때 ①계정정보(카카오톡 계정, 전화번호, 카카오톡 ID), ②정지요청 근거(사건번호, 위반법률), ③요청사유(계정별 이용중지 사유), ④증빙자료(대화내용 등) 등을 기재하여 중지를 요청하고 있음.

범죄에 이용된 카카오톡에 대한 경찰청의 이용중지 요청 현황

구 분	2021년 10월~12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11월
경찰청의 카카오톡 이용중지 요청건수	399건	6,964건	30,765건	30,140건	34,381건

자료: 경찰청

제정안 제6조는 경찰청장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확인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다중피해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중지 등 다중피

30) ㉠ 카카오 이용약관 주요 내용

제6조 (카카오계정 이용의 제한) ① 8.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세부지침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

제12조 (회원의 의무) ③ 혹시라도 여러분이 관련 법령, 회사의 모든 약관 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여러분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하거나, 재가입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해사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임시조치의 발령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 자의 요청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³¹⁾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⑥ (생략)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8. (생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제정안을 통해 경찰청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 게시된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정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는 각종 통신·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범행수단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⑤ (생략)

사.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경찰청장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제보가 접수되거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특정 계좌가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30일 이내의 기간과 구체적인 임시조치 내용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의 이용자(이하 “계좌 명의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명의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계좌의 명의인은 경찰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결과 해당 계좌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로 추정되지 않고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임시조치 종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임시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임시조치 종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좌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대신하여 공시하는 사유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2항에 따른 통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는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정안을 통해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금융기관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속아 이체한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금액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는 각종 통신·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범행수단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nti-Scam Centre, ASC)는 경찰청 內 상업범죄수사부(Commercial Affairs Department) 소속으로 은행, 핀테크,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등과 협력하여 계좌동결, 자금회수, 피해방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아.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 2.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다중피해사기피해자 또는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전받은 자금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은 잔액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이 2025년 11월 피해신고 6,400건에 대해 편취행위 이용수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비중이 47%로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대면편취(24%)·가상자산(4%) 등도 이용하는 반면 지급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외의 다중피해사기는 계좌이체 방식이 97%로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범죄수법이 달라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다중피해사기 이용 범행수단 분석(2025년 11월 피해신고서)

구분		편취행위 이용수단					합계
		계좌 이체	대면 편취	가상 자산	핀번호	우편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건수	5,163건	581건	159건	155건	490건	6,548건
	비중	79%	9%	2%	2%	7%	100%
보이스피싱 외 다중피해사기	건수	1,106건	573건	95건	148건	454건	2,367건
	비중	47%	24%	4%	6%	19%	100%

자료: 경찰청

제정안 제8조는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급정지된 계좌명의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호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³²⁾

제정안 제8조를 통해 수사기관의 장이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로, 경찰청은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를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회복 및 추가 피해 차단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다중피해사기 이용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다중피해사기 이용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 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하 “입·출금 차단”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지체없이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차단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이용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출금 차단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출금이 차단된 이용자 2. 제1항에 따라 입·출금 차단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이용자는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한 가상자산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치의 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출금 차단 및 이의신청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9조는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

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으므로,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9조는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³³⁾

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참고로, 경찰청은 가상자산은 송금·분산이 매우 빨라 피해금 편취·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입·출금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차. 벌칙(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벌칙) 제8조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제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제10조는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제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0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호는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거짓으로 지급 정지를 신고·제보하는 경우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지급정지 신청이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인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계좌 대상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